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세먼지 저감조치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590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미세먼지 저감조치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8
1.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8

I. 제안경위

2024년 2월 29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미세먼지 저감조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동안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참여하는 ①공공배출시설·②민간배출시설 및 ③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지원, 배출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2(집중관리 시설의 운영자 및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현행	개정안
	<u>배출부과금의 감면</u> 3.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u>자가측정 주기 완화</u>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 <u>로 정한다.</u>

현행법 제21조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제1호), ②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제2호) 및 ③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제3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의 운영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함.

2024년 1월 9일 개정되어 2024년 7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996

1) 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⑥ (생략)

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²⁾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절관리기간 저감조치의 대상을 공공배출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로 확대하였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 비교]

		법률 제1717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2020.3.31. 일부개정)	법률 제1996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2024.1.9. 일부개정)
대 상	공공 배출 시설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	(좌 동)
	민간 배출 시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조 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제1호)		민간배출시설은 제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제2호)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제3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제4호)		

2) 법률 제1996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1.19. 일부개정, 2024.7.10. 시행 예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⑥ (생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별 대기질 변화]

구 분	시행 前 (‘18.12~‘19.3)	제1차 (‘19.12~‘20.3)	제2차 (‘20.12~‘21.3)	제3차 (‘21.12~‘22.3)	제4차 (‘22.12~‘23.3)
PM-2.5 평균 농도($\mu\text{g}/\text{m}^3$)	33.4	24.4	23.7	23.2	24.6
‘좋음($15\mu\text{g}/\text{m}^3 \downarrow$)’ 일수(일)	13	28	35	40	31
‘나쁨($36\mu\text{g}/\text{m}^3 \uparrow$)’ 이상 일수(일)	35	22	18	18	20

※출처: 환경부

그런데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³⁾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자의 자발적인 저감 활동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배출시설,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⁴⁾와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① 저감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의 지원,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주기 완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3) 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19년부터 환경부는 제철·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감축실적을 확인하여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기존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하여 왔음.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자료: 환경부

□ 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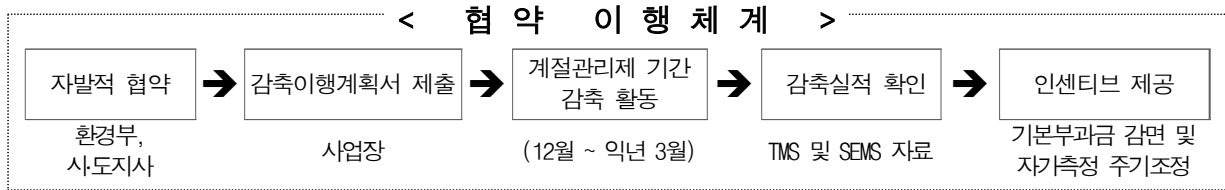
- 계절관리제(12월~3월) 이행의 일환으로 '19년부터 대형 사업장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이행 중

□ 참여현황: 발전·제철·석유화학 등 12개 대표 업종 등 366개 사업장('23.3월)

- (1차) 141개소, (2차) ^{누적}297개소, (3차) ^{누적}350개소, (4차) ^{누적}366개소
* (12개 업종 내역) 제철업, 제강업, 유리제조업, 제지업, 시멘트업, 민간발전업, 지역난방공사, 비철금속, 발전업, 석유정제업, 석유화학업, 소각시설업

- 현재는 대형사업장이외 중·소규모 사업장, 공공배출시설도 참여

※ 협약 기간은 협약일부터 4년으로 1년씩 자동 연장(4차기준, '22~'25년)



□ 주요 내용

-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 (운영개선) 노후석탄발전 폐쇄, 발전시설 상한제약 등
- (시설개선) 방지시설(SCR등) 추가설치, 연료 전환(LNG, 저유황탄등), 저녹스버너 조기 설치, 약품투입량 증대, NOx 제거 촉매 추가 등
- (측정농도 공개)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우선 공개
- (저감대책 참여) 안내 표지판 설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모니터링, 자체 비상 연락체계 유지, 차량 2부제 참여 등

□ 인센티브

- (기본부과금) 감축 비율만큼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
- (자가측정) 1~3종 사업장 측정주기 2배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지도·점검) 주기 완화(우수사업장) *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
- (재원지원) 협약이행 필요 재원 지원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 제25조
- (포상) 지자체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정부포상
- (홍보) ESG 경영 등 기업이미지 홍보 효과